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9. 6. 1.

사회건설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9년 5월 2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26일
- 라. 상정일자 :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5월 27일)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 가. 제 정 이 유

-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된 세계적 문인이자 오랜 기간 영등포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具常)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학 발전은 물론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내 문화예술 중심도시 영등포의 이미지 구축과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 요 내 용

- 기념사업은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함(안 제2조)
-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사업회 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안 제3조)
-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릴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구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념사업의 기획

및 선정,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 예산 및 결산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5조)

- 운영위원회는 총10명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되며, 구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11조)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념사업에 소요될 사업예산을 결정하되, 구가 부담하는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함(안 제12조)
- 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음(안 제13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具常)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발전은 물론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 기념사업은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구와 사업회 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며, 구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념사업의 기획 및 선정,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 예산 및 결산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운영위원회는 총10명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되며, 구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기념사업에 소요될 사업예산을 결정하되, 구가 부담

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념사업 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果課：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1 호
----------	---------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우리구에서 33년 동안 거주하다가 타계하신 구상(具常)시인은 여의도 한강변을 거닐며 창작활동으로 이룬 문학작품으로 노벨문학상 본선 심사 후보로 2회나 선정되고 또한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6개 외국어로 번역·출판되어 우리나라 시인 중 가장 많이 외국에서 애독되는 문학작품을 창작한 시인중 한분으로, 시인의 높은 문학 작품성으로 생전에 서울시 문화상,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예술원상과 더불어 사후 국민금관 문화 훈장이 추서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이자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시인으로 그의 높은 작품성과 숭고한 작가정신을 기리고자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영등포 발전과 더불어 구민으로의 자긍심 고취와 문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장기적 사업 목표를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제1조)

### 나. 기념 사업의 주최(제2조)

- 우리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추진
- 공동추진 사유 :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구상 기념사업이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의 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민관 상호 협력에 의한 공동추진으로 사업에 권위,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 상승효과 기대
- ※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대표 김상훈) : 구상시인 생전의 지인과 유족(여의도 거주)이 고인을 기리고자 2007년 2월 설립한 법인으로 구상 문학상 제정, 기념관 건립추진, 연구논집 발간 등 여러

구상시인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법인으로 구상시인 작품의 저작권, 생전의 집필 유품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

#### **다. 기념 사업회와의 협약(제3조)**

-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상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추진 협약체결

#### **라. 기념 사업의 범위(제4조)**

- 문학상 제정, 문학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조)**

- 우리구와 구상선생 기념사업회와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 주요기능
  - . 기념 사업 기획 및 선정
  - . 기념 사업 추진시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 기념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기념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 사항

#### **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6조~제7조)**

- 우리구와 구상선생 기념사업회간 동일한 비율로 총10명 이내 구성
- 위 원 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
- 우리구 위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원 1명, 문화예술 전문가 1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하는 자 1명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사. 운영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 총괄

#### **아. 운영위원회 간사(제9조)**

- 문화체육과장

#### **자. 운영위원회 회의(제10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차. 수당(제11조)**

-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중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로 인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카. 사업 예산(제12조)

- 기념사업에 소요될 사업예산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우리 구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 구청장이 정함

#### 타. 지도·감독(제13조)

- 구에서 분담한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 실시

#### 파. 준용(제14조)

-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 2009년 추경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9. 3. 26 ~ 4.15)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세계적 문인으로 타계하실 때까지 30년 넘게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신 구상(具常)시인의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기념사업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행한다.

**제3조(협약)** 제2조에 따라 사업회와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사업회 상호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5조에 따른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회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별 추진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구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 주민생활지원국장
2.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구의 운영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예산)** ① 기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예산 중 구에서 분담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